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
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장정희 의원)

의안 번호	22-146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.

발 의 자 : 고병준, 권영숙, 남해석,
이상원, 장정희, 차해영,
채우진, 최은하, 한선미,
홍지광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
운영등에관한조례」 등 8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
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지방자치법
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등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1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2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
정비(안 제3조)
- 라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4조)

마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5조)

바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6조)

사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7조)

아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
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1)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2) 「아동복지법」

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기타

1) 일괄개정조례안: 붙임

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3) 입법예고 : 2022. 11. 18. ~ 11. 23.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
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 (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아동복지법 제6조”를 “아동복지법 제14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아동청년과장”을 “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아동돌봄팀장”을 “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와 제144조”를 “제13조와 제161조”로 한다.

제3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”으

로 한다.

제4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5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로 한다.

제6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7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</u> 규정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) 협의회는 <u>아동복지법 제6조</u> 규정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되,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 ① (생략) ②협의회의 간사는 <u>아동청년과장</u> 이 되고 서기는 <u>아동돌봄팀장</u> 이 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) ----- <u>아</u> <u>동복지법 제1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담당 부서장</u>----- ----- <u>담당 팀장</u>----- -----.</p>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제13조와 제1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----- ----- -----.</p>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 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 ----- 방자치법」 제1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,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8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북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신은정
연 락 처	02-3153-8962